

제325회 정례회
2013. 12. 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20.(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정지숙 의원 외 6명

나. 제출일자 : 2013년 11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12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2월 10일

-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지숙 의원)

1. 제안사유

○ 충북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실력있는 예술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라 비상임단원을 삭제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악단과 사무국의 설치(안 제2조제2항과 제3항)
- 단원의 구분(안 제4조)
 - 단원은 악장,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
 -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함.
- 겸직금지의 변경(안제12조제1항)
 - 예술감독의 겸직금지 삭제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실력을 가진 예술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른 비상임단원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상임단원의 명칭변경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7
----------	-----

발의연월일 : 2013년 11월 29일

발 의 자 : 정지숙, 김희수, 심기보
김봉희, 김형근, 임 현
김도경 의원

1. 개정이유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실력있는 예술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라 비상임단원을 삭제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악단과 사무국의 설치(안 제2조제2항과 제3항)

나. 단원의 구분(안 제4조)

- 단원은 악장,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
-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함.

다. 겸직금지의 변경(안제12조제1항)

- 예술감독의 겸직금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 ② 교향악단에는 악단과 사무국을 둔다.
- ③ 악단은 연주를 담당하며, 사무국은 사무처리 등을 담당한다.
- ④ 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단원과 사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사무국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단원의 구분) ① 단원은 악장,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을 “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위촉과 단원의 평정”을 “단원의 위촉과 평정”로 한다.

제9조 제목을 “(위촉기간 및 연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하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원과 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p> <p>② 교향악단에는 사무처리 등을 담당할 사무국을 둔다.</p> <p>③ 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p> <p>② 교향악단에는 악단과 사무국을 둔다.</p> <p>③ 악단은 연주를 담당하며, 사무국은 사무처리 등을 담당한다.</p> <p>④ 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교향악단을 대표하며,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총괄하고 단원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괄하며, 지휘자와 예술감독은 겸한다.</p> <p>⑤ (생략)</p>	<p>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교향악단을 대표하며,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총괄하고 악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사무국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괄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단원의 구분) ① 단원은 예술</p>	<p>제4조(단원의 구분) ① 단원은 악장,</p>

<p>감독,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상임단원은 공연에 출연하는 상시근무자를 말한다.</p> <p>③ 비상임단원은 주 3일 이상 근무하며 연주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p>	<p>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한다.</p>
<p>제5조(자격과 위촉) ① ~ ② (생략)</p> <p>③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음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 중 공개전형 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예술분야의 식견이 풍부하고 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한 능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위촉한다.</p> <p>⑤ 도지사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무국장으로 위촉한다.</p>	<p>제5조(자격과 위촉)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p> <p>④ (현행 제⑤항과 같음)</p> <p>⑤ (현행 제④항과 같음)</p>
<p>제6조(전형위원회) ①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의 위촉과 단원의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p> <p>② ~ ③ (생략)</p>	<p>제6조(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위촉과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p> <p>② ~ ③ (생략)</p>
<p>제9조(위촉기간) ① ~ ② (생략)</p>	<p>제9조(위촉기간 및 연령)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 등) ① 예술 감독, 상임단원, 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 ③ (생략)</p>	<p>③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하로 한다.</p> <p>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 등) ① 단원과 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